

윤리경영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제 정 2010. 04. 01.
개정(1) 2011. 12. 30
개정(2) 2014. 05. 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윤리경영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리경영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공사가 시행하는 용역 또는 구매 및 대고객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독립성) ①옴부즈만은 부사장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 (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2.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반부패 청렴 제도 및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신설 2014.5.27)
 4. 고충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신설 2014.5.27)
 5.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옴부즈만 회의 참여
 7. 기타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5조(구성) ①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1. 경영, 경제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부동산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기업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6.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사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가

제6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옴부즈만의 활동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상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둔다.(개정 2011. 12. 30)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척·회피·기피)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모니터링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모니터링 대상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

주인 경우

3.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②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수행 방법) ①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2. 공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 ②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표) ①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 ②옴부즈만의 활동결과는 대표옴부즈만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③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보존되어야 하며, 각 옴부즈만의 위촉시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보존해야 한다.

제12조(여비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활동결과 및 회의록) ①옴부즈만 활동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윤리경영 담당부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 임원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 회의진행에 관하여 개최일시, 출석위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조 (세부사항)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부 칙(제정)

이 기준은 201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기준은 201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